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0. 9.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서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11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0. 9. 8 (수) ~ 2010. 9. 14 (화)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 아현동 주민센터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동균 [간 사] 송병길 [위 원]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 민 센 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행정건설위원회실 아현동주민센터 행정건설위원회실 행정건설위원회실	명금길 신승관 명금길	장홍용 남선옥 장홍용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정	내용	비고
2010. 9. 8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 현장방문 	
2010. 9. 9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감사 - 공보관광과 감사 - 자치행정과 감사 - 문화체육과 감사 - 전산정보과 감사 - 민원여권과 감사 	
2010. 9. 1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과 감사 - 지역경제과 감사 - 재무과 감사 - 세무1과 감사 - 세무2과 감사 	
2010. 9. 13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과 감사 - 교통지도과 감사 - 건설관리과 감사 - 토목과 감사 - 치수방재과 감사 	
2010. 9. 14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5. 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

부서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감 사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아트센터 운영 파악 • 공무원 민원응대에 대한 친절도 	
행 정 관 리 국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직(조무 지도) 승진 현황 • 구 청사 임대내역 현황 • 직원들의 인사 현황 •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 합정동 균형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한 동청사 이전 현황 • 신수동 구청사 활용방안 • 동 주민센터 개보수 현황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 아트센터 사계절 스케이트장 운영 현황 • 구 생활체육협의회 각 종목별 연합회 예산지원내역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지원계획 • 각종 위원회 현황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선출 현황 • 각종 이월(사고·명시)현황
	세무1·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체납징수 확보 방안
건 설 교 통 국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 • 주차단속요원(계약직) 운영 현황 • 주차단속 현황 •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
	토 목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도로포장공사 현황 • 각종 토목공사시 주민이 꼭 알아야 할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등 홍보방안 • 도화동 보행자우선구역 운영 현황

부서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아현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단속현황 • 주민자치센터 관련 회계 현황 • 동 행정차량 현황 • 희망근로 및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예천군 자매도시 점포임대 현황 • 거주자우선 주차 불법 점유 실태 • 농수산물 시장 내 상가 임대료 현황 • 문화재단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 수지내역
마포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민원접수 실태 •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 나눔행사 운영 실태 • 불친절한 민원응대 실태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감사담당관

- 마포아트센터 운영(전반적 조직체계 및 운영실태, 인력충원·배치의 적정성 등 인사문제, 수입·지출등 관련서류 및 근거서류 정리 등 회계문제, 각종 불요불급한 공사·물품구입·행사·위탁과 관련된 예산낭비적 요소, 운영적자 원인의 구조적 문제점 및 재정수지현황, 불친절 사례 등) 전반에 걸친 감사 실시
- 민원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근무태도 파악
- 성미산 학교부지 매매와 관련된 홍익재단의 회의록 제출
- 보건위생분야 감사시 전문분야가 아닌 공무원의 감사의 실효성 확보
- 합정동장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령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지역주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되고 있음.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합정동장 발령 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행정관리국

■ 총무과

- 구청사 임대 내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개괄적으로 제출되었는바, 향후 자료제출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특정부서에 집중되고 있는데 향후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방안 강구.
- 우리구 기능직(조무 지도)의 승진율이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직원 사기양양 측면에서 타구와 비교하여 승진인사시 반영
- 성희룡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조치.

■ 자치행정과

- 동 주민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일률적이지 않음.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나이 등 제한이 없는데 이를 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받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
- 주민자치위원이 대부분 직능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음. 직능단체의 장 또는 임원이 아닌 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력소를 불어 넣는 방안을 강구.
- 합정동 균형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이전예정인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음.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편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고 아울러 독립청사를 갖지 않고 복합건물에 청사를 이전하게 된 이유를 보고.
- 주차난이 심각한 신수동 118번지 앞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설치 건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보고.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

- 신수동 구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청사 일부를 보훈단체에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 사용에 있어서 특정단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 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시 공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특혜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 문화체육과

- 마포아트센터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 요즘은 이용주민도 거의 없는 실정에 계속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있음. 사계절 스케이트장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실시.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가 80여개나 있는데 회의 개최현황을 보니 개최실적이 최근 거의 없는 위원회도 있음. 이러한 위원회는 조속히 정비.
- 금번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출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임원선임 관련 회의 의결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시설관리공단 감사 전까지 보고.
- 각종 사업추진시 이월(사고, 명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낭비, 민원발생,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추후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지역경제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동 주민센터, 상공회의소를 통한 피상적인 홍보에 지나지 않고 있음. 어려운 소상공인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 세무1·2과

- 체납징수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보다 강화하여 철저히 징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자 들에게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해 주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구세징수방안을 강구.

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 주차구역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
- 우리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는 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 주민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요망 예를 들어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 고장시 전화하면 출동해서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편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등 사후조치 강화방안 강구.

■ 교통지도과

- 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을 단속하면 시정을 하는데 시정 이후에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조치 철저.
- 택시 법규위반사항 단속할 때 승차거부와 자격증 미비치에 대한 불법사항을 동시에 단속,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과잉단속으로 판단되는 바, 상황을 고려해가며 단속하여 과태료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
- 주정차단속요원(계약직)에 대한 야간, 휴일 단속시 계약직 주정차 단속요원 채용의 운영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건설관리과

- 관내 학교주변 공사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니 학교 주변 공사장은 평일 08~16시, 토요일 08~14시에 공사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판례를 참고하여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강구
- 노점 단속과 관련하여 평상시 상인과 구청과의 사전 대화 테이블을 갖는 등 일방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

■ 토 목 과

- 도화동 보행자우선구역 시범사업에 차도인도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사가 공사이전보다 심해졌으니 조치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도화동 보행자우선구역 공사지역 주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와 삼성아파트에서 세운 훈스로 도시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니 정비하고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강구
- 성산초교옆 계단공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공사 시행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여 주는 대책을 강구.
- 상태가 노후되지 않은 도로를 민원이나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다시 포장공사를 하여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꼭 필요하지 않은 공사는 삼가 주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도로 포장 공사현황과 사유를 제출.

동 주민센터

■ 아현동 주민센터

- 희망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배점을 부여 할 때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을 기하고 아울러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송정동 자매결연 도시 관련 사용된 금액 등 각종 회계서류(지출 증빙)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 경북 예천군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점포 1개소를 예천군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9월 말까지 임대를 끝낸다고 하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수탁자와 협의하여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방안을 강구.
- 경북 예천군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은 없고 월 임대료도 타 점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고 있음.
이 임대 점포에서는 쌀 잡곡 등 농산물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동일업종의 타 점포 임대 상인들과 비교 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임대 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도 싼 이유를 면밀히 작성하여 보고.
-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중 7구간을 보면 주차면에 ○○일보 보급소 및 상가에서 오토바이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사고 위험도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
- 현재 농수산물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나 마포농수산물 시장의 물건 값이 너무 비싸고 상인들은 물건 값이 오르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상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행정 강화방안 강구
- 농수산물 시장 내 상가 임대료를 5% 인상하려고 하는데 상인들은 농수산물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는 획일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상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한 공단으로서의 명예를 잘 이어주기 바람.
- 업무보고시 보고한 문화재단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 수지내역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해주기 바람.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선출시 수기로 작성하는 회의록에만 의존하지 말고 녹취, 녹화 등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기 바람.

마포문화재단

- 마포문화재단의 운영 전반에 걸친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었음. 고객감소, 서비스 질 저하, 시설 미흡, 부실경영, 사계절 스케이트장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등 잘 정리된 민원내용 이었음. 또한 회계서류 정리 부분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에 대한 근거가 없는 부분도 있음.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있음.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되었음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조직의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8년부터 현재까지 회계관련 지출 내역을 항목, 일자, 사용방법(카드, 현금 등), 내용 등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
-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 나눔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기 있는 공연에 대하여는 객석 나눔행사가 실제로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5%의 객석이 나눔행사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기 공연에 대하여는 5%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많은 변수가 있지만 재단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노력하여 좋은 취지의 사업에 보다 많은 소외계층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직원의 불친절은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조직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불친절 직원에 대한소명자료를 직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기 바람.
- 아트센터 운영 프로그램 초청장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영일이 지나서 구의원들에게 전달되었음. 최소한 프로그램 상영일 이전에 배부되어야 할 것임.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4. 건의사항

-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재원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담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주기 바람.

- 내구연한이 경과한 행정차량이 있는데 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와 차량 대폐차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단속보다는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편의 측면에서 단속요망
- 재단 운영비를 구 지원에 의존하고 수익성이 없는 가운데 우수직원 산업 시찰, 인센티브 등의 복리후생제도는 맞지 않는 것 같음. 구 지원금에 의존하고 운영하는 점을 감안 직원 복리후생제도는 사업추진시 심사숙고 해주기 바람.

다.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0년 10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이며, 건의사항은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함. 단,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 담당관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감사결과를 토대로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결정)